

- 국가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 -

**전북 첨단바이오 부스트업 플랫폼 구축 기업지원 바우처 서비스 통합 공고**

전북특별자치도 내 첨단바이오 기술의 기술이전·사업화·글로벌 확산을 지원하는 전북 중심의 바이오 전략 플랫폼 구축의 일환으로 스타트업, 실증스케일업, 링킹랩 지원의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지역 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2월 5일

한국화학연구원 부설 국가독성과학연구소장  
(재)전북테크노파크 원장

**1 지원개요**

사업목적

- 전북특별자치도 내 첨단바이오기업의 단계별·기술별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기업 보유 기술 역량의 밸류업 지원으로 기술고도화, 제품상용화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실현

사업내용

사업명	• 국가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 '전북 첨단바이오 부스트업 플랫폼'
사업내용	• 지역 내 첨단바이오 기업 육성을 위한 R&D 및 연계기술지원
지원규모	• 15건 14.55억원 내외
지원유형	• 스타트업 지원 • 실증스케일업 지원 • 링킹랩 공동연구 지원
지원분야	• 국가전략기술(바이오)
관리기관	• (재)전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바이오신산업기획팀

**2 지원규모 및 지원유형별 지원내용**

지원규모

유형	과제 수	지원규모
스타트업 지원	2	과제당 1억
실증 스케일업 지원	6	과제당 1.1억
링킹랩 공동연구 지원	7	과제당 0.85억

※ 과제 수 및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수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지원유형별 내용

구분	스타트업 지원	실증 스케일업 지원	링킹랩 공동연구 지원
개요	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제품 상용화 지원	국내 중견 및 대기업과의 기술 비즈니스 모델 검증 (PoC) 기회를 제공	정부출연연구기관(정출연 또는 대학) 보유장비 및 전문인력 연계 문제 해결 지원
작성 방법 <small>※ 지원분야 참조</small>	국가전략기술(바이오)에 해당하는 기술분야 창업기업 자유주제	국가전략기술(바이오)에 해당하는 기술분야 비즈니스 연계 자유주제	국가전략기술(바이오)에 해당하는 기술분야 정출연(또는 대학) 연계 자유주제
지원금액 (과제당)	<b>1억원/과제</b>	<b>1.1억원/과제</b>	<b>0.85억원/과제</b>
지원기간	12개월	12개월	12개월
신청자격	[참고1]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참조]		
추진방식	- 스타트업 : 기업 단독 - 실증 스케일업 : 기업 단독 - 링킹랩 : 기업 주도 컨소시엄 필수 ※ 단, 컨소시엄 구성기관은 도내 정출연, 대학, 지역혁신기관 1) 기업주도 컨소시엄 방식 : 주관(첨단바이오 기업) + 참여(정출연 대학, 지역혁신기관) - 주관 + 참여1 / - 주관 + 참여1 + 참여2 - 주관 및 참여기업에 대한 별도 참여비율을 정하지 않음(자율형식) - 본 사업은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며, 주관기관은 전체 사업비에 대한 민간부담금(자부담) 전액을 직접 부담하여야 함		
지원금 지원기준	총사업비의 80%이내(민간부담금 중 10% 이상 현금 부담)		

○ 지원내용

지원유형	지원내용	결과물
스타트업	<b>아이디어 기술적 구현을 위한 초기 시제품 제작 및 BM고도화 지원</b> - 초기 시제품 제작비 지원 - 특허 출원 및 특허 장벽 컨설팅 지원 - 공공 인프라(바이오파운드리, 공공 GMP 시설) 활용 비용 지원 - 시장성분석, BM 수립 비용 지원 - 그 외 자율적으로 제시 가능 ※ 관리기관 검토이후 승인	- 결과보고서
실증 스케일업	<b>환자/현장 데이터 확보, 대량 생산 공정 최적화, 글로벌 인허가 지원</b> - 병원 연계 임상 시험 비용 및 실증 테스트베드 비용 지원 - CDMO 연계 공정 개발 및 대량 생산 최적화 비용 지원 - FDA/EMA 인허가 컨설팅 비용 지원 - 디지털 헬스 데이터 활용 비용 지원 - 그 외 자율적으로 제시 가능 ※ 관리기관 검토이후 승인	- 평가(시험) 결과지 - 사업화 검증 결과물 - 결과보고서
링킹랩	<b>정출연(대학, 혁신기관) 연구장비활용 개방형랩실 운영 및 기술인력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지원</b> - 정출연(또는 대학) 공간·장비 활용 비용 - 개방형랩실 공간·연구장비 등 활용 지원 -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지원 - 재직자 전문기술(장비오퍼레이팅 포함) 교육 지원 - 그 외 자율적으로 제시 가능 ※ 관리기관 검토이후 승인	- 기술이전계약서 (또는 특허출원서) - 결과보고서
공통	- 인건비(현금), 자산취득 비용 계상 불가 ※ 위의 항목 외 기업의 수요에 따른 비용을 자율적으로 제시 가능함. (단, 평가위원회에서 적절성 판단)	

3

지원 분야

국가전략기술(바이오) 분야

기술분야	
① 합성생물학	생명과학에 공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인공적으로 생명체 구성요소 시스템을 설계·제작·합성하는 기술
② 유전자·세포 치료	유전자 결함보완·기능추가 관련 유전자치료제 또는 세포·조직 기능복원 관련 세포치료제의 개발·제조 관련 기술
③ 감염병 백신·치료	신·변종 및 미해결 감염병 발생시 관련 백신·치료제를 신속하게 개발·제조할 수 있는 전달물질 및 후보물질 발굴 등의 기반 기술
④ 디지털헬스 데이터	바이오·의료 데이터를 수집·생성·통합·분석하고, 개인맞춤형 진단·치료·예방·건강관리 및 데이터 기반 신약개발에 활용하는 기술

4

신청자격 ※ 지원자격 미충족시 지원제외 됨

주관기관 : 접수마감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기업 (법인 및 개인사업자)으로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

① 도내 창업(기술)보육센터\* 입주기업 또는 도내에 공장등록\*\*을 하였거나, 사업장 소재 기업 (3가지 요건중 하나만 충족시 가능)

\* 중소기업진흥공단, 대학, 국공립·정부출연 연구기관,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·기술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

\*\*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공장

②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거나,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립 예정인 기업

※ 설립 예정기업 중 본 사업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,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증서를 협약 체결 시 제출해야하며, 미 제출 시 협약 대상에서 제외

※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 연구소기업은 위 기준을 면제함

- 단, 전주시·익산시·정읍시에 투자를 확약\*한 기업은 ①호 기준을 면제함

\* 신청서류 제출시 전주시·익산시·정읍시와 체결된 투자협약서 제출必

참여기관 : 전북특별자치도 내 정부출연(연), 유관 연구기관, 대학

## 5 지원제외 대상

- 주관 및 참여기관으로 신청한 기업이 최근 2년('23~'24년) 연속, 유동비율 50%이하 또는 부채비율 500% 이상인 경우(CB, BW, RCPS는 부채에서 제외)
  - ※ 단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(또는 부채비율 500% 이상)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가능.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K-IFRS와 K-GAAP을 혼용할 수 없음. (단,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월만 적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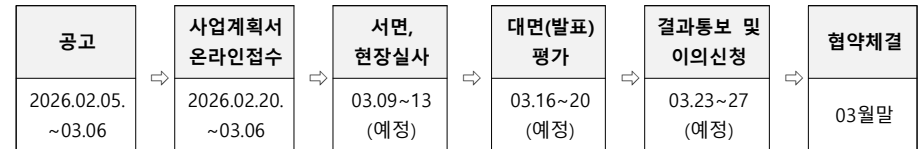
[ 지원가능여부 예시 ]

구분	유동비율		부채비율		지원여부
	'23년	'24년	'23년	'24년	
A기업	49%	47%	300%	400%	X
B기업	55%	60%	550%	650%	X
C기업	20%	75%	600%	320%	O
D기업	100%	40%	400%	540%	O
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참여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)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
  -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  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  - 부도, 휴폐업,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
- 공고일 현재 주관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사업신청 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
  - 4대 보험 미가입시 소속기관 임직원으로 불인정 ※ 등기이사는 소속으로 판단
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,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,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
- 최근 결산기준 기업이 자본전액 잠식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 - 단,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-'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'BBB-' 이상인 경우는 예외
-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, 개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
## 6 신청 및 접수방법

- 접수기간 : 2026. 2. 20.(금) ~ 2026. 3. 6.(금), 16:00까지
  - ※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접수 시스템에 제출된 과제만을 인정하며, 접수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과제는 자동탈락. 접수 불가 과제의 경우, 3월 9일(월) 통보 예정
-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 (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)
  - 온라인 접수 : <http://rnd.jbtp.or.kr> (전북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)
    - ※ 홈페이지 회원가입/로그인 완료 후 상단 메뉴 과제신청으로 접수
    - ※ 전산등록마감일에는 데이터접속 증가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(전산접수 가능용량 100MB)
- 관련문의 : 전북테크노파크 바이오신산업기획팀 류소정 주임 연구원  
(☎ 063-534-5113, e-mail : [funny1215@jbtp.or.kr](mailto:funny1215@jbtp.or.kr))
- 평가절차 및 일정



- 제출서류 (사업계획서, 제출서류 등 <http://rnd.jbtp.or.kr> 에서 다운로드)

순번	구비서류	부수	비고
1	사업신청서	1부	서식1
2	사업계획서	1부	서식2
3	참여의사 확인서	1부	서식3
4	민간부담금 출자확약서	1부	서식4
5	개인정보 이용 및 과제정보 활용 동의서	1부	서식5
6	사업자등록증(해당시, 공장등록증)	1부	사본
7	최근 2년간 ('23~'24) 재무재표	각 1부	사본
8	(공고일 기준) 4대보험 가입증명서	1부	사본
9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	각 1부	사본

## □ 평가항목

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
지원의 필요성	목표의 명확성	20
	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	
기술(제품)의 우수성	사업화 및 상용화 가능성	30
	국내외 시장 판로개척 가능성 및 적정성	
	향후 개발 내용의 구체성	
지원내용의 타당성	사업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	30
	지원사업의 내용, 범위의 구체성	
	사업성과의 확장 가능성 및 지속성	
기대효과	산업적 파급효과	20
	경제적 파급효과	
<b>총 점</b>		100

## □ 검토방법

- 신규 공동기관 검토는 검토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현장실사, 대면 발표, 비대면 검토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
-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
- 신청과제의 검토를 통해 검토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'지원가능과제', 종합검토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'지원제외'로 분류함
- '지원 가능 과제'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, 예산 범위 내에서 '지원가능과제'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
-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검토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·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

※ 관련 규정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(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) 제3항 및 제15조(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)

□ 선정점토 시 가점사항 :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며, 총 5점 한도

-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유니콘 기업
  - 아기유니콘기업(3점)
  - 예비유니콘기업(5점)
- 입지 요건 관련 가점 사항(아래 입지 관련 가점 중 1건만 부여)
  - 전북특구 소재 기업(1점)
  - 전북특구 소재 연구소기업(3점)
  - 전북특구 소재 첨단기술기업(3점)
  - 2025년 지역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연계 과제(5점)
-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"우수(혁신성과) : 90점 이상" 평가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(1점)

※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"우수"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

○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(1점)

※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,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

○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에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6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(1점)

※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

□ 지원제외 대상 (p9 유의사항 참고)

- ①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중인 기업
- ②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- ③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또는 기업 대표자
- ④ 수행실적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재직확인이 불가능한 상시근로자
- ⑤ 부동산업, 유흥업 등 정부지원사업 제한분야 제외 등

## □ 유의사항

- 신청서 오기재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,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
- 선정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 있을 수 있음.
- 선정평가 이후 과제 수행 중에도 지원제외 대상임이 확인될 경우,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될 수 있음.
  - 본 사업 취지 목표와 상이한 경우(단순 R&D아이템, 유흥, 퇴폐 등) 지원 제한
  -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제안자 또는 제안기업이 신청한 경우 지원 제한
  - 기업의 부도 또는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
(단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)
  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
(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)
  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
(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  - 최근(2025년)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
  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인 경우
  - 타 사업 참여 사업 중 지원 분야 중복인 경우
  -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유사한 특허, 출원, 저작권 등이 타인에 의해 이미 출원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평가(지원) 대상에서 제외
- 제출된 서류 및 사업신청 내용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,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
  - 기타 신청서류 허위기재, 누락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과제 수행기업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신청자(기업, 대표자, 총괄책임자 등)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

-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,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
- 본 공고로 제출된 기술 소유권은 사업 지원 제출자에게 있으며, 평가 절차 진행과정에서의 기술 외부유출은 없음
- 첨단바이오 부스트업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에 필수 참석해야하며, 미참석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선정평가 결과 및 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예산은 협약 체결 전까지 수정·보완될 수 있음

## □ 주의사항

- 공공재정환수법 적용

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시행(2020.1.1.)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·보상금·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가됨

## \* 제재부가금

- ① 허위청구(청구할 자격이 없는에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): 받은 지원금의 5배
- ② 과다청구(받아야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청구하여 받은 경우): (받은 지원금-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)의 3배
- ③ 목적 외 사용(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): (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)의 2배

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에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또는 전북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안내